

Tax News Flash

March 7, 2025

국세기본법 개정, 세무조사 시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개요

세무조사 시 정보 및 서류 제출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요구한 정보 및 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회는 2025년 2월 27일 이행강제금 신설 조항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25년 3월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개정 주요내용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질문 및 정보, 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과태료는 반복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부과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낮아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과태료와 별도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류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요구한 정보 및 서류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설된 제85조-7조에 따라, 과세당국(즉, 관할 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 중 세법에 따른 장부 및 기타 서류("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서류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함.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정하여야 함.
- 납세자가 이행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납세자의 1일당 1일 평균수입액의 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평균 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세당국은 서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 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 부과와 감경 절차 및 제85조-8 (신설)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 개정(신설)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부터 적용함.

시사점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도입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재제를 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가 해외에 위치한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일반적인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한국 자회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향후 세무조사에서 이행강제금이 적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기타 세법 규정에서 발표될 이행강제금의 상세한 규정과 세무조사 중 과세당국의 이행강제금 실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Contacts

김 주 덕

+82-2-709-0707
michael.kim@pwc.com

양 윤 정

+82-2-3781-9278
yunjung.yang@pwc.com

차 일 규

+82-2-3781-3173
il-gyu.cha@pwc.com

조 창 호

+82-2-3781-3264
changho.jo@pwc.com

김 영 옥

+82-2-709-7902
young-ok.kim@pwc.com

로버트 브로웰

+82-2-709-8896
robert.browell@pwc.com

서 백 영

+82-2-709-0905
baek-young.seo@pwc.com

한 규 영

+82-2-3781-3105
kyu-young.han@pwc.com

유 정 은

+82-2-709-8911
jeong-eun.you@pwc.com

이 승 렬

+82-2-3781-2335
seung-ryul.lee@pwc.com

윤 지 영

+82-2-3781-9958
jiyoung.yoon@pwc.com

이 경 순

+82-2-3781-9982
kyoungsoon.lee@pwc.com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